



창업교육센터 규정

제정일	2014.11. 1
개정일	2019. 3. 1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창업교육센터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 이 센터는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 센터는 학생들의 창업마인드 제고 및 체계적인 창업활동 지원과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생 창업교육에 관한 업무 (개정 2015. 6. 1)
2.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
3. 학생 창업관련 워크숍 및 국내·외 연수에 관한 업무 (개정 2015. 6. 1)
4. 창업캠프,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(개정 2015. 6. 1)
5.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업
6. 창업 멘토링 시스템 및 창업 멘토단 운영 (개정 2015. 6. 1)
7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 4조 (센터장)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 5조 (매니저 및 연구원 등) 센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니저 및 연구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 6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중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6인 내외로 구성한다. (개정 2015. 6. 1, 2016. 3. 1)

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신설 2015. 6. 1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신설 2015. 6. 1)

1.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신설 2015. 6. 1)
 2.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(신설 2015. 6. 1)
 3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(신설 2015. 6. 1)
 4. 센터 운영에 대한 결과평가 및 환류 (신설 2015. 6. 1)
 5.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(신설 2015. 6. 1)
- ⑤ 위원회 구성은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. (신설 2019. 3. 1)

제 4 장 재정 및 회계

제 7조 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, 학교비, 기부금 및 기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 8조 (회계) 센터의 회계와 예·결산은 본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.

제 9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센터는 매년 2월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0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